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요약)(1)

김선정 · 동국대 법학과교수
하홍준 · 연구센터 주임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산권 담보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액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진 부동산에 비하여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어서 담보물로 활용하는 것에 기대를 갖게 한다.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의 실행은 기술보유자의 창업이나 기업금융을 도움으로써 우리 나라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원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은 다액의 창업비 또는 초기사업비를 필요로 하며 그 조달방법으로는 벤처자본, 개인투자자(엔젤), 은행, 공적 기금 등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금융시장은 간접금융의존도가 높아 신규사업자의 공개시장진출이 매우 까다로우며 개인투자자 또는 투자조합에 의한 투자도 이제 태동단계에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벤처자본의 영업활동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주된 자금 공급원으로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금융기관은 안전성위주의 보수적 대출심사기준과 부동산 위주의 물적 담보를 중시하는 대출관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의 유형담보가 부족하고, 초기사업자인 만큼 금융거래상의 신용이 미미한 신규사업자로서는 금융을 얻기가 불가능에 가까움을 뜻한다. 이와 같은 금융현실의 애로를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사업자가 갖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금융을 얻는 방법이 구상된 것이다.

이 산업재산권의 담보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고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까닭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의욕적인 정책목표아래 가치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별도의 기구를 통한 대출을 실행하며, 학계와 실무계에서도 객관적 평가방법의 확립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담보법리의 구축에 관심을 경주하고 있고, 유통시장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도 변화의 징후가 있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나라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제도의 활성화가 벤처기업 등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그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 등 직접 담보대출제도를 실시할 기관의 담당자의 특허권 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특허담보권제도의 존재를 기업실무자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재산관련사업의 육성

지식재산관련사업은 지식재산의 유효한 활용, 유동화 및 금융상품화를 위하여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각종 사업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제공업무로서 가치평가업무, 유효한 활용을 위한 컨설팅업무, 지식재산의 운용 및 관리대행사업으로서 라이선스교섭과 실시료 회수대행업무, 실용가능한 복수의 지식소유권과 노하우를 조합하는 업무, 지식재산의 유통사업으로서 중개·알선업무, 관련금융산업으로서 지식재산의 상품펀드화, 새로운 지식재산개발에 투자하는 특별목적회사, 기타 산업재산권신탁사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산업재산권평가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재산권담보금융의 다양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산업재산권 유통시장의 활성화

지식재산관련사업 가운데 산업재산권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재산권유통시장의 육성이라는 점에 논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특허법상의 특허권입질 등 산업재산권담보가 가능한 법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이 부진하였던 것은 지식재산에 관한 확립된 시장이 없었다는 점에 있다. 시장의 부존재는 담보물의 처분을 곤란하게 하고 담보가치로 평가할 교환가치를 어렵게 할 수 없게 한다.

유통시장은 발명의 상품화, 휴면특허의 발굴을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산업재산권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secondary market이 형성되어야 한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는 거래가격의 형성과 가치평가사례를 축적하여 평가가격과 시장가격을 피드·백하여 현실에 맞는 가격평가를 실현하며, 가치평가사업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평가비용을 절감시키며 지식재산의 유동성과 환가성을 높인다. 특히 금융기관이 양도담보방식을 선호함으로써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① 산만한 형태로 진행되는 유통시장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지식재산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통지식재산의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등이 이와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② 시장참가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을 통한 알

선·중개, 국제특허유통 박람회 개최, 특허기술 공개마켓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산업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도 실행되어야 한다.

4. 담보제도의 다양화

특허권 등에 대한 담보방법을 단순히 질권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환매, 가등기담보 등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객관적이고 간이한 담보평가방법의 개발과 「산업재산권 가치평가준칙」의 제정

산업재산권담보 대출제도가 보급·정착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담보가치평가방법의 확립 및 그 간소화·매뉴얼화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고 적정한 평가기관 또는 노하우를 지닌 전문평가인이 존재하여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우선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가치평가업무 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산업재산권 가치평가준칙」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치평가방법의 적절성, 공정성을 보장할 가치평가 담당자의 육성과 담당기관의 지정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전문기관의 설치 또

는 지정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의 존재는 정보공유와 제공, 지적소유권의 가치평가방법의 고도화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가치평가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지식재산 등의 무체재산의 감정평가를 하는 조직으로 전문적인 평가회사와 회계사무소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 무형재산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형재산의 평가가 중시되면서 기술평가를 위하여 민간의 독립기관으로 전문평가기관을 두기로 하고 기술평가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무형재산평가사 자격고시 합격자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 입법취지와 입법사상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관계전문가회의나 세미나를 확산시켜 평가기법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담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면서, 대학의 산업재산권관련학과에 교과목 설치를 권장하는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이 기관에서 평가한 지식재산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배정하거나 해당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각 금융기관별 내규를 제정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반드시 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감정평가업무도 민간경쟁체제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술평가사제도의 도입을 계속 검토하고 만일 이 제도가 실현되면 평가기관은 기술평가사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평가사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는 다음의 세가지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유사직역의 역할에 대한 객관

적 평가, 둘째, 산업재산권담보대출이나 기술시장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어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가 시장을 형성하는지 여부, 셋째, 외국의 기술평가기관의 국내 진출여부이다.

7. 평가기관의 역할 확대와 책임강화

현재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대출제도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을 통한 국가의 기금운용이 중심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금운용기관은 산업재산권 등의 기술력평가방법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이들 기관이 하고 있는 기술력 평가에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전문가의 참여가 미진한 것도 기술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기금운용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특허청 등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산권 평가기관이 평가와 함께 직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배정하고 그에 대한 회수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업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컨대 특허청이 공식 지정한 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저리의 공적 자금을 우선배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임직원의 대출실행에 따르는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의 전문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적임으로 여겨진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술력을 자체 평가하고 특허기술장터 등을 통한 특허유통시장과의 연계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중심으로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전문가, 학계, 변리사, 기타 기업의 전문가 등을 망라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들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허청에서 제정한 준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공신력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절차 등이 이루어진다면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특허출원중인 권리에 대한 대출실행 방법 또는 우선심사제도의 강구

평가기관의 신뢰성이 제고되면 아직 특허출원 중인 기술에 대하여도 담보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특허등록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특허권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화에 나설 때에는 이미 기술의 진부화가 진행되거나 사업기회를 실기하게 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받을 권리에 대한 질권설정을 허용하는 특별규정을 특허법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에 대하여 우선심사하여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 방안은 발명의 조기 권리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특허기업 출원권리의 우선심사에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심사 및 등록이 지연되는 발명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우선심사대상의 범위는 특허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9. 지식재산권의 패키지화와 저당법(가칭) 제정-기술연계 담보제도의 확립

지식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처분하는 경우에 이의 매수인은 당해 지식재산을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얻고 매각하는 것보다는 사업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만일 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의장권·상표권·영업상의 노하우가 패키지화되어 있다면 사업화는 훨씬 용이하고 그 만큼 담보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물건이나 권리가 단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다면 이를 하나의 물건이나 권리로 취급한다고 하여 물건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기업담보 또는 재단저당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재단저당제도에 의하면 기업자는 기업활동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기업의 물적 시설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담보화하여 충분한 금융을 얻을 수 있고, 저당권자는 이 교환가치에 의한 담보로 안심하고 투자를 하며, 이자의 형식으로 기업이윤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10. 산업재산권침해행위의 철저한 규제

산업재산권침해행위는 산업재산권의 담보가치를 훼손하고 가치평가를 도로에 그치게 하는 것으로서 민사·형사·행정상의 철저한 규제가 요구된

다. 저작권담보대출을 실시하려고 계획하였던 某은행이 저작권침해행위가 빈번한 국내실정을 이유로 계획을 보류한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97년 특허법개정에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상향조정한 것은(제225조 제1항) 타당하다고 하겠다.

11. 여신리스크 완화제도의 구축

1) 담보대출금의 일부에 대한 특허담보보험 등이 필요하다. 단순히 기술 담보에 대한 보증을 위한 기금 등의 운용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확보방법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담보대출금의 일정비율에 대해서 만이라도 채무자인 특허권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보증보험 회사들이 영업종목으로 운용하고 있는 채무이행보증보험에 특약을 붙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 보증보험회사들이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체결시 요구하는 인적 또는 물적 담보에 갈음하여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취하는 것이다.

2) 또한 신규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각국의 공적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일이 흔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진흥기금에 의한 조성금, 중소기업금융公庫에 의한 신사업육성대부제도, 통상산업성 기술진흥과의 기술개선비 보조금제도 등이 실행되고 있다.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대출리스크를 과감히 끌어 안는 공적인 채무보증제도의 구축은 민간금융기관의 대출의욕을 제고하고 대출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은행이 모든 대출에서 공적 기관의 보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변형된 형태의 담보대출에 지나지 않는다.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상태에서도 단순히 기술력 평가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지원이나 업무상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정부의 연·기금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저리로 민간금융기관에 산업재산권담보대출을 위한 자금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대출 받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도 사전적 위험분담으로 담보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하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분권화의 진전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적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산업의 특화, 고용과 세원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산업재산권담보취급기관에 대한 각종지원 등을 통하여 위험을 분담할 것이 기대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관악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998년 11월 9일 벤처기업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악구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신보가 보증지원 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책임분담하에 이와 같은 협조체제를 확대하는 것이 기대

되는 시점이다.

13. 지식재산권의 증권화

「증권화」란 시장성이 결여된 자산, 특히 채권 기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그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자산을 특별목적회사에 완전 이전(true sale)하고 그 특정의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익을 상환에 쓸 것으로 하여 특별목적회사는 그 자산의 신용력만을 담보로 사채나 CP, 신탁수익증서 등 증권(pass through나 pay through)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금융기관보유채권 유동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의 자금여력이 생긴다.

만일 산업재산권담보대출채권의 증권화가 이루어지면 담보를 실행한 금융기관은 조기에 통상적인 기업금리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그만큼의 대출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유동화는 대출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입법적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쟁점을 지니고 있다.

14. 주식장외시장의 개방과 활성화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창업자나 투자자의 궁극적 목표는 NASDAQ을 통한 기업공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장외시장에의 상장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스닥 등록요건을 정비하고 그 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의 변제력을 높여 대출실행기관이 대출금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계 속>